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

의안 번호

제출연월일 : 2015. 10.

제 출 자:동작구청장

1. 제안이유

일자리 창출 사업, 취업지원 사업,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, 민·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일자리지원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에게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(안 제5조)
 -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방향, 사업, 교육훈련, 홍보 등
- 나.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사업 추진 · 지원 (안 제6~7조)
 - 기업유치,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, 구인·구직 서비스, 직업능력개발 등
- 다. 보조금 지원 사업 (안 제8조)
 -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 규정
- 라. 일자리위원회 설치 · 운영 (안 제9~16조)
 - 민·관 협력 체계 구축하여 일자리정책 등 통합관리
- 마.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 (안 제17조)
 - 취업지원시설, 창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 마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재정사정에 따라 탄력적 편성

다. 합 의: 별도합의 필요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없음

(2) 입법예고(2015. 8. 27 ~ 9. 16) : 별도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(5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(이하 "구"라 한다)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 구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- 1. "일자리 창출"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 - 2. "취약계층"이란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등을 말한다.
- 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,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근로자의 임금조건, 근로시간,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.
 - ③ 구청장은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4조(법령 등과의 관계)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일자리 정책

제5조(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구청장은 5년마다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
- 2.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- 3.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
- 4.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6조(일자리 창출 사업)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
 - 2.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
 - 3. 여성, 장애인, 장기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
 - 4.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
 - 5.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7조(취업지원 사업)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고용지원 사업(구인 · 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)
 - 2.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
 - 3.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
 - 4.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
 - 5.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8조(보조금 지원 사업)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공공일자리 사업
 - 2.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
 - 3.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
 - 4. 사회적기업, 마을기업,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
 - 5. 창업 지원 사업

제3장 일자리위원회

- 제9조(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구청장은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및 민·관 협력 체계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,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1. 제5조에 따른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
 - 2. 제6조, 제7조,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부구청장, 구 국장급 공무원
 - 2.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
 - 3. 학계, 경제계,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제11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12조(위원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-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 - 1.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 -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 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- 제13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)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 -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 -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.
- 제14조(위원의 해촉)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 - 1.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
 - 2. 질병·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 - 3.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- 제15조(수당 등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제1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4장 일자리 지원시설 등

- 제17조(일자리 지원시설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구인 · 구직 상담 및 알선
 - 2. 취업지원 교육
 - 3.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
 - 4.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 - ② 구청장은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창업 보육공간 지원, 정보제공, 교육,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 - 2. 창업 자금 및 전시·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
 - 3.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제18조(행정·재정적 지원)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
- 2. 제7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
- 3. 제8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
- 4. 제17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
- 5.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 · 교육 ·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
- 6.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, 개인,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
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③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이나 개인·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표창의 종류, 추천, 공적심의 등은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」를 따른다.
- 제19조(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)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,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,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20조(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, 비영리단체 또는 구 출자·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「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